

January 17, 2020

Legal Update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으로 나뉜 벤처투자 관련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AFE: 투자방식으로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 벤처투자촉진법은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를 투자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제1호 라목).
- 이는 미국에서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하 “SAFE”)와 유사한 것으로, SAFE는 투자 계약 체결시에는 투자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결정하고, 취득할 주식의 규모, 최종 투자단가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투자조건들은 후속 투자시의 기업가치 평가와 그 밖의 조건에 따라 확정되도록 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입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도입

- 벤처투자촉진법은 현재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전문개인투자자 확인제도를 법률상 등록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벤처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고 (벤처투자촉진법 제9조),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등에게 투자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10조).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비율의 합리적 조정

-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기업법 및 창업지원법상의 개인투자조합 관련 사항을 동법으로 이관하면서 등록요건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투자의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 개인투자조합은 종전에는 모든 자금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의무를 달성하면 그 외의 자금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13조).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으나, 벤처투자촉진법은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24조).
- 이외에도,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 의무 비율의 합리적 조정

- 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 별로 각각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할 의무가 있었으나, 벤처투자촉진법은 창투사별로 운용 중인 총 자산 전체를 기준(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바(벤처투자촉진법 제38조),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외에도 벤처투자촉진법은 창투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 규제를 없애고,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20배)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43조 등).
- 이외에도, 창투사 및 그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42조).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통합

- 그간 유사한 성격의 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자금인 모태조합의 출자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으나(벤처기업법 제4조의3),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모태조합의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벤처투자촉진법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전체 자본금 기준으로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되, 개별 펀드별로 출자금액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 의무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은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한 경우 중견기업 및 해외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는 상장회사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51조).
- 벤처투자촉진법은 연기금 및 은행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우세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투자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출자 지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60조).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법정기관화 및 의무투자비율에 대한 특례

-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66조 내지 제69조).
-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을 이관하였는데,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는 일반 민간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별도의 투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70조).

경과 규정

- 벤처투자촉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벤처투자촉진법 부칙 제1조).
- 벤처투자촉진법상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의 등록요건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며(벤처투자촉진법 부칙 제2조), 기존에 벤처기업법 및 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등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등으로 보게 됩니다(벤처투자촉진법 부칙 및 제6조).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투자제도가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벤처투자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첫 단추로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경우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법률상의 지위(상법 및 자본시장법령과의 조화 등)와 회계처리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라 투자를 하거나 이에 따른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벤처투자촉진법을 비롯한 여러 벤처투자제도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 02-316-1624

✉ jhcho@shinkim.com



김병인

소속변호사

☎ 02-316-1572

✉ bi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 판교 · 베이징 · 상해 · 호치민 · 하노이 · 자카르타
